

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폐지 〉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6613)

2025. 2.

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건오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1
1.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폐지(안 제16조)	1

I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: 정 부

나. 제 출 일: 2024. 12. 17.

다. 회 부 일: 2024. 12. 1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운영 실적이 저조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.

III. 검토의견

1.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폐지(안 제16조)

가. 개정안 요지

-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16조를 삭제함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	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-----

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6조(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) ①
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

2.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애니메이션

----- 애니메이션산업의 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,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검토사항

- 현행법 제16조¹⁾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포함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,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.²⁾

1) 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)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

2.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,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다만,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는 2020. 6. 4. 동 법률 시행에 따라 18명의 위원으로 1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,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총 7차례에 불과한 상황임.

[참고: 최근 3년간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개최 내역]

구 분	일 자	안 건
1차	2022.1.13.	· (안건1) 2023년도 예산 방향 설정 자문 · (안건2) 애니메이션 통계 개선 관련 논의
2차	2022.4.5.	· (안건1) 2023년도 예산 수립 관련 논의 · (안건2) 연구용역 추진 관련 자문
3차	2022.9.22.	· (안건1) 2023년도 예산(정부안) 관련 논의 · (안건2) 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논의
4차	2022.12.19.	· (안건1)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 · (안건2) 2023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계획 발표
5차	2023.3.30.	· (안건) 2024년도 사업 및 예산 관련 논의
6차	2023.5.22.	· (안건1) 2024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 관련 논의 · (안건2) 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관련 논의
7차	2023.9.20.	· (안건1) 2024년도 사업 및 예산 관련 논의 · (안건2) 표준계약서 추가 제정 계획 관련 논의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2) 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(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① 법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2.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
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○ 현행법 제4조³⁾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법적으로는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위원회는 심의기관 또는 자문기관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, 이에 개정안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‘자문 성격 위원회’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,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라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
○ 다만,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폐지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⁴⁾로부터 급변하는 산업적 환경과 타산업과의 복잡한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활동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고, 정부가 동일한 내용으로 2022. 9. 30.

- 3) 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방향
 2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
 3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
 4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애니메이션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
 5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반조성
 6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술·표준의 개발
 7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 8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
 9.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·연구
 10.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
 11.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
 12.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4)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(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,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,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,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, 한국애니메이션학회,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,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)

제출한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
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」
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에서도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
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의결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는 점을
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⁵⁾⁶⁾

- 참고로, **문화체육관광부**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
경우 향후 필요시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7조7)에 따른 국무총
리 소속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하에 애니메이션분과위원회를
구성하여 전문가 및 업계 등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입장임.

5) 제40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2023.3.21.) 참조

6) 아울러 현행법에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애니메이션 진
흥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민간의 의견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므
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
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7) 「**콘텐츠산업 진흥법**」 제7조(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)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
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
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
2.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·조정

3.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

4.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

5.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국방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
체육관광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중소
벤처기업부장관·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·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

2.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

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,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

문 의 처
02)6788-5376